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신설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14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 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신설

개정안은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상담교사(1급·2급)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1급·2급)----- ----- ----- -----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u><신설></u>	
전문상담교사 (1급·2급)	1. 전문상담교사(1급):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현행법 제20조¹⁾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제22조²⁾에서는 교원의 자격으로 원장·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기준을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법³⁾」은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제19조), 별도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제19조의2),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고 있음(제21조).

1)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함에 따라 유아기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이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유아의 올바른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상담 등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세 미만 전체		2,415,349	2,285,605	2,121,390	1,943,208	1,791,788
ADHD	소계	19,594	23,252	23,163	29,119	37,785
	5세 미만	519	663	692	996	942
	5~9세	19,075	22,589	22,471	28,123	36,843
정신 및 행동 장애	소계	78,564	84,206	83,411	98,201	107,391
	5세 미만	22,022	23,217	22,436	25,299	22,247
	5~9세	56,542	60,989	60,975	72,902	85,144

자료: 교육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유치원에 두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을 규정하고(안 제20조의2 신설),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도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1급·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체계 및 운영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비교】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신 설>	제20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②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1급·2급)----- ----- ----- ----- ----- -----.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개정 2019. 12. 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 격 학 교 별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중 등 학 교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초 등 학 교		
특 수 학 교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1개교마다 1명의 신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최대 총 1조 76억 4,600만원(국·공립유치원마다 1명 배치하는 경우, 시나리오 1) 수준임.⁴⁾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의 심리·정서 문제행동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부족하여 상담·치료에 대한 적기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유아기의 심리·정서 문제행동은 학교폭력, 학업포기 등 학령기 부정적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하여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4)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시나리오 1) 모든 국공립유치원	203,027	188,420	196,386	204,689	215,125	1,007,646	201,529
시나리오 2) 3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70,011	64,974	67,720	70,584	74,183	347,472	69,494

주: 1) (시나리오1) '24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1개교마다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신규 채용·배치될 경우의 인건비·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추정한 결과값임

2) (시나리오2) '24년 기준 3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1개교마다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신규 채용·배치될 경우의 인건비·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추정한 결과값임

3)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이 있거나, 유치원 수가 변동될 경우 또는 유보통합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92